

마당놀이' 명칭 누구나 쓸 수 있다

마당놀이의 상표권을 둘러싼 극단 미추와 MBC의 분쟁이 일단 미추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마당놀이라는 명칭으로 공연한 극단 미추를 상대로 MBC가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당놀이라는 명칭을 MBC가 최초로 사용했더라도 이미 보통명사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지루하게 끌여온 양자간의 분쟁은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이미 이 코너(지난해 10월 19일자 18면)를 통해 보도했듯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년간 마당놀이 동업자였던 둘이 갈라서면서 부터다.

MBC는 미추가 마당놀이 변강쇠전을 공연하려 하자 지난해 10월 상표권의 사용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그러자 미추는 특허청을 상대로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마당놀이는 사전에도 올라있는 보통명사로 MBC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게 미추의 주장이었다. 그 사이 MBC의 마당놀이 암행어사 줄도야!는 장충체육관에서, 미추의 마당놀이 변강쇠전은 정동이벤트홀에서 연말에 공연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마당놀이라는 명칭은 미추의 뜻대로 만인의 것이 됐다.

특히 MBC는 미추의 것같은 연극공연업 뿐만 아니라 무용공연업, 음악공연업, 영화, 음반녹음대여, 라디오 및 TV제작 등 총 일곱가지에 대한 권리까지도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여러 장르에 걸친 무효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MBC는 지난 95년 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한 바 있다. 미추의 손진책 대표는 “법원이 예술(가)의 자율성을 인정해준 의미있는 결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MBC 법무저작권부 송윤석씨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다”고 말해 항소하지 않을 뜻을 비쳤다.

출처 중앙일보

MP3플레이어 특허 분쟁 해결 급물살'

MP3플레이어 특허 분쟁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MP3플레이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엠피맨닷컴과 디지털웨이 현원 바롬테크 등 주요 MP3플레이어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특허분쟁을 조속히 매듭짓는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문제가 해결되면 침체됐던 국내 MP3플레이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일단 법원을 통하지 않고 특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조만간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지만 전망은 밝은 편이다. 이번 합의가 1년 가까운 특허 분쟁으로 서로의 주장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엠피맨닷컴이 요구하는 것은 특허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것.

다른 회사들이 특허를 인정할 경우 향후 몇년간 특허료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특허료도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선으로 물러섰다. 다른 업체들은 엠피맨닷컴이 내건 특허료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다.

재판을 하면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확

신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출처 한국경제

MIT공대,EFI, MS 등 94개업체에 이미지 편집 SW 특허권 침해 소송

미 MIT공대와 EFI(Electronic For Imaging inc)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94개 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MIT공대측은 캘리포니아 포스터시의 EFI가 MIT공대 윌리엄 스크라이버 교수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FI측은 지난주 텍사스 텍사카나의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94개 업체가 지난 6년간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라이선스 사용료가 정확히 어느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FI는 지난 90년 MIT 측으로부터 특허 사용권을 얻은 후 애플 컴퓨터와 제록스 등 16개 회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해 왔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엔씨소프트, 리니지 저작권 분쟁 합의

온라인게임 업체 (주)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작가인 신일숙씨와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 법률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상호 협력기로 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신씨에게 리니지의 저작권료로 1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씨를 엔씨소프트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조건으로 저작권 분쟁에 합의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따라 ▲추가적인 리니지 에피소드 제작 ▲리니지2 개발 및서비스 ▲리니지 제목, 등장인물, 지명 등을 응용한 캐릭터 상품 제작 및 공급 ▲제3자를 통한 리니지 서비스 등 리니지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원작자와의 저작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기쁘다"며 "신씨에게 지급한 10억원은 법원측이 제시한 중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측의 2차 저작권 권리에 대한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신씨가 리니지 캐릭터 상품 및 가정용 비디오 게임 제작계약을 맺은 애니키노 및 디지털드림스튜디오 측과의 이중계약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전망이다.

출처 연합뉴스

안동 '찜닭' '봉추' 측 저작권 손배소

최근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안동지역 전통요리인 '찜닭'을 둘러싼 음식업체들간의 저작권 갈등이 결국 법정 분쟁으로 번지게 됐다. '찜닭' 음식점의 원조격인 '봉추찜닭'체인사업자인 (주)봉추 푸드시스템사는 '유사 상호를 이용, 자사 홍보물의 일부 사진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G업체 황모씨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 법에 냈다.

봉추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안동 출신 30

대 사업자들이 모여 처음으로 대학로에 “봉추찜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연 뒤 큰 인기를 끌면서 체인사업을 시작, 현재 35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황씨 등이 최근 “계백”, “안동” 등 유사 상호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추측은 또 ‘황씨 등은 마치 자사와 유사 업체인 것처럼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가 하면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사의 홍보물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문화일보

매 제품이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출처 동아일보

“윈도 상표권 침해” 린도스 고소

마이크로소프트(MS)가 리눅스 운영체제(OS) 개발업체인 린도스(Lindows)를 자사 윈도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다. MS는 지난 20일 미국 샌 디에이고 소재 리눅스업체 린도스가 고의적으로 윈도 상표권과 비슷한 회사명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있다며, 린도스 사명 사용 중지 및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린도스는 MS 오피스 등 윈도OS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리눅스 OS를 개발하는 업체로, 온라인 음악 사이트 MP3닷컴의 CEO를 역임했던 마이클 로버트슨이 올초 설립했다.

이 회사는 내년초 린도스 OS를 출시할 예정으로, 주로 MS 오피스 등 윈도 애플리케이션을 대량 구입했으나 저렴한 운영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MS의 존 머친슨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린도스 OS 판매를 금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린도스라는 회사명이 소비자에게 MS 윈도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린도스의 로버트슨 CEO는 ‘MS측은 소비자가 MS와 린도스닷컴을 혼동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같은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유죄를 선고받은 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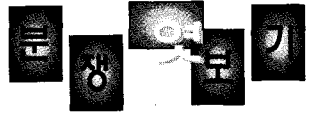
그는 또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택권이

사업체 비아그라 도메인 상표권 침해 사용 금지 판결

서울고법 민사5부(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비아그라” 생산업체인 미국 화이자사(社)가 ‘유사 도메인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금지시켜 달라’며 ‘viagra.co.kr’ 도메인명을 등록해 인터넷으로 칩즙을 판매하는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화이자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면서 비아그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고 생 칩즙과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소개해 판매했다’며 ‘일반인들은 이런 영업 활동이 화이자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생산해온 화이자는 권씨 등이 “비아그라” 홈페이지를 통해 칩즙 등을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판



별로 없는 요즘,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MS는 리눅스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등 오픈 소스 진영과 전에 없는 언쟁을 벌이고 있다고 C넷은 전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규모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판단해줄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을 언급하기를 꺼렸다. 법률전문가들은 그러나 팜의 특허권 침해가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라이선스 수수료 외에도 손해액의 3배 정도를 제록스에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1 제록스 특허권 침해 소송 4년, 결국 승리

복사기로 유명한 제록스가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제조업체팜을 상대로 4년 전 제기했던 필체 인식 기술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서부 지방 법원은 팜이 제록스의 유니스트룩스라는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록스는 3콰이 인수한 U.S 로보틱스가 자사의 특허 기술인 유니스트룩스와 흡사한 필체 인식 기술을 팜의 PDA에 이용했다며 지난 97년 4월 U.S 로보틱스사를 미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미 연방 법원은 2000년 6월 팜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제록스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인식 패턴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제록스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제록스는 미 항소법원에 재소해 올해 10월 특허권 침해 소송의 재심 결정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1999년 3월 3콰이는 팜에 인수됐으며 팜은 이 기술을 '그래피티'라 부르고 있다. 그래피티는 자판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글씨를 써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써 현재 팜사에서 생산하는 개인 휴대 단말기(PDA)에 내장되어 있다.

제록스의 CEO 크리스타 캐론은 "아직 손실

2 시이름 상표권 국내업체 패소... 서울고법 판결

국내에 유통되는 장미 품종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독일 종묘회사와 국내 화훼업체 간에 장미 이름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장미전쟁" 2라운드에서 국내 업체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9일 독일 종묘회사인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실금 1억여원을 달라"며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공사측은 코르데스사에 4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장미경매를 하면서 코르데스사가 등록한 "레드 산드라" 등의 장미품종 상표를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매 상품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98년 국내 특허청에 장미 품종 23개에 대해 상표등록을 한 코르데스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민들이 출하한 장미를 경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등록한 명칭을 표기해 사용하자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출처 동아일보

휴대폰 결제, 특허권 문제로 「시끌」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가 결제 방식에 대한 특허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업체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사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99년 12월 휴대폰 결제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용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출원, 지난 10월 정식 특허 결정서를 획득한 인포허브가 경쟁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행사를 공식화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것.

이에 대해 특허권 확인 통고서를 받은 다날, 모빌리언스가 발끈했고,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함에 따라 갈등의 골이 더욱 깊게 패이고 있다. 다날(서비스명 : 와우코인), 인포허브(서비스명 : 텔레디트), 모빌리언스(서비스명 : 엠캐쉬) 3개 업체는 지난해 8월 비슷한 시기에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3업체 모두 업계 선두를 다툰 만큼 외형과 매출 면에서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액 면에서 다날이 비교 우위에 있지만 회원사로 가입한 고객사(CP)의 수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인포허브의 특허권 획득은 기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경쟁업체들은 인포허브가 특허를 받은 부분과 현재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인포허브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의도는 경쟁사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을 낳고 있다.

또한 계속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한 특허권 무효화 작업에 별이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날의 홍보 담당 윤선영 차장은 "인포허브가 초기 선불충전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특허도 신청했지만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한 건별 과금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특허가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 모델로 봤을 때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할 만큼 독창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동종 업계에서 대체로 수궁할 만한 태도와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일방적으로 통고서를 보내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윤 차장은 또 "다날은 70여개 특허를 출원해 벨소리 다운로드 방식 등 약 12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적대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휴대폰 결제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99년 6월 이미 특허권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된 특허권을 인정받을 경우 이후에 출원된 인포허브의 특허권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포허브는 당초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 확보와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한 해외 기술료 수입 등을 기대하고 자사의 특허권을 주장했으나 경쟁업체들의 민감한 반응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인포허브의 홍보 담당 구보숙 대리는 "시장 질서를 흐리려는 의도는 없으며, 기술 특허에 대한 권리 자체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어렵게 결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온 우리의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 악질적인 반응"이라고 반박했다.

구 대리는 "다날의 경우 99년 6월에 출원했던 특허는 지난 6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사의 기술이 우월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다날에겐 우리도 벨소리 다운로드 관련 특허에 대해 건당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다.

역으로 우리도 특허권에 따른 기술료 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핑퐁 게임'처럼 이어지는 다날, 인포허브, 모빌리언스 3사간 힘겨루기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는 지나봐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체들의 이의신청이나 법적 대응이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더라도 특허권 행사 방법이나 기술료 협상 등 지루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출처 eMEEK

기토끼? 원조 논쟁 "홍콩인형 모방"

봉제인형 제조업자인 송모씨는 '인기 캐릭터 "마시마로(일명 엽기토끼)"는 홍콩제 인형을 모방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마시마로 저작권자인 김모씨와 정품 생산업체 S사를 상대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송씨는 '머리가 몸통보다 크고 실눈을 감은 채 줄고 있는 토끼 모양은 99년 홍콩무역개발위원회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실린 토끼 인형과 외형상 비슷하다'며 '마시마로는 이 카탈로그를 모방, 변형한 것에 불과해 창조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김씨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시마로 캐릭터사업 대행업체인 씨엘코 엔터테인먼트(주)는 '마시마로는 김씨가 98년 말부터 개발에 들어간 작품으로 진출 대상인 홍콩측에서도 모방과 관련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출처 동아일보

연방법원, 인텔-브로드컴 특허권 침해 소송서 인텔 소송 기각

인텔이 미 통신용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을 상대로 제기했던 2가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브로드컴의 손을 들어줬다.

미 월명턴 연방지방법원은 브로드컴이 비디오 칩과 네트워킹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인텔이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C넷'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인텔의 비디오칩 관련 특허권은 인정하나 브로드컴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네트워킹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인텔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패소에 따라 인텔이 주장했던 브로드컴의 8200만달러 피해액 보상 계획은 무산됐다. 또 이번 결정으로 두 기업간 특허권 분쟁의 40%가량이 해결됐다.

하지만 2가지 디지털 비디오칩 및 패키징에 관한 3가지 특허권 소송이 아직 남아 있어 브로드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인텔의 처크 멀로이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이라면서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브로드컴의 헨리 니콜라스 CEO는 이번 승리는 브로드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통신 "네트워크 업계의 승리"라며 '브로드컴의 MPEG 비디오 데이터 압축 기술과 이더넷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컴퓨터, MPEG-2 특허권 침해

엠펙2(MPEG-2) 특허권자인 소니 등 세계 6개 기업이 델 컴퓨터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프랑스텔레콤·미쓰비시전기·미국 필립스·사이언티픽애틀랜타(SA)·JVC 등 6개 기업은 지난 7일 세계 최대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이 MPEG-2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무단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6개 기업은 델이 DVD 드라이브가 장착된 자사 컴퓨터 제품을 광고하면서 MPEG-2 표준규격을 채택, DVD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고 묘사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또 델은 DVD드라이브와 MPEG-2 디코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탑재한 컴퓨터를 300달러 가량 더 받고 판매하고 있고, MPEG-2 표준을 지원해 DVD파일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도 수백달러 이상의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며 원고측은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6개 기업은 지법에 델이 더이상 MPEG-2 기술을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과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해액 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델 대변인은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통보받은 적이 없어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MPEG-2와 관련된 380개 특허권은 6개 기업과 미 컬럼비아대학, 뉴욕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6년 "MPEG LA"라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 그동안 애플컴퓨터 "HP" 컴팩컴퓨터 등 세계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왔다.

MPEG-2는 디지털비디오 신호를 암호화(Incoding)하고 해독(Decoding)하는 데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가령 기존 동영상이 초당 24프레임의 화면을 제공하는데 반해 MPEG-2 기술을 사용하면 동영상 재생시 24프레임 중 바뀌지 않는 프레임은 제거, 보다 빠르고 유연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든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삼성車-BMW, 상표권 갈등

르노삼성자동차와 독일의 BMW가 내년 하반기 출시예정인 르노삼성의 소형차 "SM3"의 이름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자칫하다간 상표권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BMW는 최근 르노삼성의 "SM3"가 자사의 차량 명칭과 비슷하다며 상표권 침해로 규정, 대응조치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BMW 차량은 3,5,7시리즈로 나가고 배기량에 따라 318,325,520 등을 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차 이름이 정해진다.

BMW는 이같은 차명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다.

BMW는 지난 99년에도 삼성이 SM518,520,525 등으로 이름을 붙이자 삼성측에 항의하고 한국에도 상표 등록을 해버렸다.

그 결과 삼성이 갖고 있는 상표권은 SM5밖에 없다.

수출용 차에는 아예 SM5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SQ5"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배기량을 표시하는 518,520 등도 사용이 불가

능하지만 BMW측은 이미 나온 차이기 때문에 2년간 양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BMW관계자는 "SM5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용인하지만 SM3까지 나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본사의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측은 "SM시리즈는 등록된 상표인 만큼 SM3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BMW측이 상표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현재 본사차원에서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르노삼성이 SM3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315,318 등 뒤에 붙이는 배기량 표시 숫자 표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발특2002/2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이 되려면

